

학생회칙

제정 : 2005. 8. 16.

개정 : 2008. 10. 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금강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자치능력과 지도력을 신장하여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금강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기간 중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2.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운영전반에 참여할 권리
4.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기능)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학술, 문화 및 체육활동
2. 기술 및 근로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기타 학생자치 활동

제7조(기구)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 및 각 학부 학생회를 둔다.

제8조(효력정지) 본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9조(규제사항) 본회 회원은 대학의 운영권 및 교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총학생회

제10조(임원구성) 총학생회는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제11조(임기)** ① 총·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본회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불가피하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본회 내에서 그 직위를 대행한다.

제12조(권한) 총학생회는 학생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13조(의장) 총학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4조(소집) 총학생회는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구성) 총학생회는 회원 1/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 제16조(직위)** ①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장과 집행부의 장이된다.
 ②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께위 시 그 직위를 대행한다.

제17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2학기 종강 익일로부터 익년 2학기 종강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의 각 국장 및 차장을 임명한다.
2. 운영위원회, 집행부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총학생회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집행부의 각 국장 및 차장을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
6. 별도기구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7.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집행부

제19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0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이 임명하는 각 국 국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학생회 일체의 사업계획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각 부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기획국 : 본회 제반사업의 기획, 운영
 - 나. 사무국 : 서무, 행정 및 기타 제반업무
 - 다. 재정관리국 : 회계업무
 - 라. 문화홍보국 : 학술, 예술 활동 및 동아리에 관한 제반업무, 본회의 문화 및 홍보에 관한 제반업무
 - 마. 학생복지국 : 학생복지 및 체육활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제반업무

제5장 대의원회

제22조(지위)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3조(임기) 대의원 임기는 매년 3월 2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1학년은 선출된 날로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24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부별 대표 대의원 1명 및 각 전공별 대표 대의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학생회 임원과 대의원회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제25조(의장) 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은 본회 및 회원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업무 및 권한)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2. 총학생회의 소집 요구권
3. 총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5.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권
6. 대의원 의장의 선출권
7. 감사결과 부정 발견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의 징계 요구권
8.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

제27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및 9월과 11월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제적대의원 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28조(의결)** ① (일반정족수)제26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의결사항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는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다.
- ② (특별정족수)제26조에 규정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에 제1항은 제적대의원 2/3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6장 동아리연합회

제29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본 대학에 등록된 모든 동아리와 그 구성원으로 한다.

- 제30조(회장)** ① 동아리연합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은 1개 이상의 동아리에 가입한 자로 하며, 각 동아리 대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동아리간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할 책임 있다.

제31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다음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동아리활동에 관한 제반지원을 한다.
2. 각 동아리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안을 수립하여 총학생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회칙) 동아리연합회의 기타 세부사항인 동아리연합회칙은 따로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3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집행부국장으로 구성한다.

제35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비를 책정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2. 총학생회의 사업전반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3. 총학생회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4. 결산보고를 검토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5.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집행부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7.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8.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
9.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36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4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37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학부학생회

제38조(지위) 학부학생회는 학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학부학생 자치활동의 중심기구이다.

제39조(구성 및 조직) ① 학부학생회는 해당학부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② 학부학생회는 학칙 및 학생회칙과 상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40조(학부회장 선출) 학부회장은 각 학부별 학생회장이 주관하는 선거관리에 따라 선출한다.

제41조(학부회장 권한) 학부회장은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부 학생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제42조(학급대표) ① 학급(전공)별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의 대표를 둔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2.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3. 학생단체 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은 학생

② 학급대표는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대의원 자격) 학급대표는 본회의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제9장 재 정

제44조(경비) 총학생회의 경비는 총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한다.

제45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학기 종강 익일로부터 익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② 전항의 회계연도는 1학기를 1기로 하여 2기로 나누되 각 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행한다.

제46조(예산) ① 예산은 집행부가 각 학생회 기구별 및 사업계획 항목 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조정하여 대의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② 집행부는 대의원 소집 10일전에 예산안을 공포한 후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을 받은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심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총학생회비 관리는 집행부의 학사행정국에서 담당하고 그 인출 및 집행은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총학생회장이 집행한다.

⑤ (가예산)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기간 안에 본 예산이 통과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 ⑥ (경정예산)예산 수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과된 예산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⑦ (집행예산)예산 집행 시에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집행부의 학사행정국은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 ⑧ (결산보고)결산보고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 결산안은 운영위원회가 일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와 학교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선거

제47조(선거의 시기) 선거는 임기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제48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집행부원 3명, 학부대표 3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겸임하고 학부대표는 학부별 학부회장 또는 학부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다.

③ 학부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 규약에 따른다.

제49조(보궐선거) 총·부총학생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보궐선거를 실시 할 경우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제11장 회칙개정

제50조(발의) ①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재적대의원 2/3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발의
3. 본회 회원 1/3 이상의 발의

② 발의 시 총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제51조(의결, 공포) 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의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학생회장은 의결된 사항을 즉시 공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회칙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개정회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